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139호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·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권고에 따라 표시·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16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7. 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·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

○ 전화 : 043-719-2183, 팩스 : 043-719-2180

이메일 : silverxjung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리령 제 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)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용어가 마약류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의 마약, 대마. 다만, 대마의 경우에는 큰말(大馬),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의 양귀비, 아편
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코카인, 헤로인, 모르핀(몰핀), 코데인,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,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, 프로포폴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,4-메틸렌디옥시-엔-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

5.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, 은어 등 용어

제8조의4(비용지원)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영업자 등은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하는 자 중 간판, 메뉴판, 포장재 등에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간판 또는 메뉴판 변경 비용
2.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명 등 변경으로 인한 포장재 변경 비용

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를 하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
2.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
3.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
4.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시장·
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호서식]

마약 등 명칭 변경 비용지원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
신청내용	신청사유	
	지원대상 [ ] 간판 [ ] 메뉴판 [ ] 제품 포장재	
	변경비용	
	본인부담 가능 금액	지원신청 금액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 명칭 변경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,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3.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4.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	수수료 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 청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정	→	통 보
신청인		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·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4제4항의 신설에 따른 비용지원은 이 규칙 시행 전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한 경우도 지원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3(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)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용어가 마약류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. 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의 마약, 대마. 다만, 대마의 경우에는 큰말(大馬),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의 양귀비, 아편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코카인, 헤로인, 모르핀(몰핀), 코데인,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,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, 프로포폴 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서 규정

	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,4-메틸렌디옥시-엔-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5.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, 은어 등 용어
<신 설>	제8조의4(비용지원)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영업자 등은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하는 자 중 간판, 메뉴판, 포장재 등에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말한다.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간판 또는 메뉴판 변경 비용 2. 제8조의3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명 등 변경으로 인한 포장재 변경 비용

	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를 하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. 변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3.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4.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

	게 통지하여야 한다.